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복지지원과(성별영향평가)

- 특이사항 없음(복지지원과-24302(2023. 6. 20.))

라. 기 타

1) 입법예고: 고성군공고 제2023 -860호

가) 예고기간: 2023. 5. 22. ~ 2023. 6. 11.(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5. 본문: 붙임과 같음

6.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개정 목적

-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의 관계 상위법령의 개정 및 변경사항 등을 정비하고, 농어업 진흥·육성 및 농어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 검토

| 구 분 | 주요 내용 | 비고 |
|------------------------------------|---|---------------------------------|
| 안 제2조의2 (정의) | · 농어업, 농어촌, 농어업인, 생산자 단체 등에 대한 정의 신설 | · 적정 |
| 제3조 (군수의 책무) | · 현행 기본방향을 군수의 책무로 명확하게 규정 | · 적정(제5조 군의 책무에 관한 사항 삭제·정비) |
| 안 제4조 (농어업·농어촌 진흥 시책의 수립·추진) | · 현행 기본원칙을 삭제하고, 진흥시책의 수립·추진으로 변경 | · 적정 |
| 안 제10조 (농어업 경쟁력 강화) | · 농어업인의 역량강화 및 농어업 진흥·육성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근거 신설 | · 적정(지방재정법 제17조 관련) |

참고]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자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생략)

○ 종합검토 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관계 상위법령과 관련된 내용 등을 정비하고, 농어업 진흥·육성 및 농어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외 연수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목적과 필요성,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한 농어업인 국·내외 연수와 관련하여 예산집행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사업시행 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세심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8. 토 론 : 없음.

9. 심사결과 : 2023. 7. 12. 원안가결 함.